

보세전시장 물품 반출입 및 화물관리 안내

(업무문의 : ☎ 02-510-1125,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 성재영 관세행정관)

물품 반출입 신고

보세전시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물품 반·출입시 **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**를 받아야 합니다.

만약,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**무단반출입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화 물 관 리

보세전시장 운영인은 보세 전시장에 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, 관세법 및 관계법규와 세관장이 발하는 제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, 반입물품 중 **판매·오락·증여용품은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 후 사용**하여야 합니다. (보세운송물품은 반입하는 즉시 UNI PASS에 반입신고!!!)

※ 관련규정

관세법

제157조 제1항 (물품의 반입·반출)

-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77조 (과태료) 제4항 제2호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제2호 관세법 제157조제1항 ~중략~

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(고시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 우측 킷 메뉴 법령정보에서 검색)

제10조 (반출입의 신고)

- ① 보세전시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 ~중략~
- ② 제 1항에 따라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. ~중략~

제11조 (물품검사)

- ①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외국 물품이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경우 운영인은 그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 ~중략~